

『白山學報』 간행 및 논문 투고 규정

2013년 01월 02일 전면 개정

제1장 간행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백산학회의 전문 학술지 『백산학보』(영문명 : THE PAEK-SAN HAKPO)의 간행과 투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성격) 『백산학보』는 한국사와 북방(대륙)관계를 연구하는 학술지로서 연구 논문과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따른 소개 및 전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회수) 『백산학보』는 년 3회 간행한다.

제4조 (시기) 『백산학보』의 간행일은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특집호) 특집호 또는 기획 주제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필진은 학회 이사들이 그 동안의 연구업적을 조사 정리하여 해당 분야별로 5명씩 추천한다.
- 편집위원회는 추천된 필진 가운데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선정하여, 집필을 의뢰한다.
-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주관아래 논문을 발표한 필자가 발표 당시 질의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백산학보』 논문 투고 간행 규정'과 '『백산학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본인의 논문을 『백산학보』에 게재를 의뢰할 경우에는 예비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심사에 들어간다.

제2장 투고

제5조 (자격) 논문의 투고 자격은 국내외 관련 전공자로 하되, 동일 필자가 본 『백산학보』에 논문을 2회 연속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분량) 200자 원고지 120장内外로 하되, 150장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투고) 원고의 투고는 본 규정과 학회의 '『백산학보』 연구윤리 규정'을 먼저 숙지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먼저 투고기한 내에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첨부파일 형식을 갖추어 아래에 명기한 전자우편 주소로 제출해야 한다.
학회사무실 : ☎ 044) 860-1875, E-mail : light8510@naver.com
편집이사 : ☎ 02) 3408-3876, E-mail : sejongmu@sejong.ac.kr
2. 본 학회 홈페이지 또는 『백산학보』에 게재된 '『백산학보』 논문투고 신청서'와 '『백산학보』 연구윤리 서약서'의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원고와 함께 기한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투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분야분류표'를 참조하여 투고자의 전공분야와 함께 투고 논문의 '심사회망분야'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4. 논문투고 신청서와 연구윤리 서약서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첨부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거나 양식을 출력 또는 복사를 하여 작성한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투고 기한까지 제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가 보류되거나 논문이 반려될 수 있다.
6. 본 학회에 접수된 논문은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기한) 원고 접수는 간행일로부터 6주전으로 한다.

제9조 (체재) 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본문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글자에 대해 한글을 먼저 쓰고 괄호 안에 해당 한자를 병기한다.

1. 검색을 위하여 주제어(한글, 영문) 5~8개를 명시하고, 영문 제목과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반

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논문의 구성은 제목, 저자명, 목록,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 주제어 포함)순으로 한다.
3.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 수혜 논문임을 밝힐 경우,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4. 논문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과 저자의 소속 기관, 그리고 직위와 함께 전자우편 주소를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예)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 skandb@hanmail.net
5.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논문연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본 학회와 연락을 취한 연구자를 주저자로 하여 저자들 중에서 맨 앞에 쓴다. 또한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주저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괄호 안에 '제1저자'라고 표시하여,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예) ○○○(제1저자) · ○○○(공동저자)
6.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이면서 논문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본 『백산학보』 편집 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에는 연결저자(교신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
예) ○○○(제1저자) · ○○○(연결저자)
7.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이면서 제1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작일 경우에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
예) ○○○ · ○○○(연결저자)
8. 한글 초록은 논문의 논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되 800자 내외로 하며, 주제어는 대표적인 단어 중 5~8개 내외로 한다.
9. 장절(章節)의 표시는 장(章)은 로마숫자(I, II, III ...)로, 절(節)은 아라비아 숫자(1, 2, 3 ...)로 표기하고, 소절(小節) 이하의 표시는 전각기호 괄호((1), (2), (3) ...)와 전각기호 원(①, ②, ③ ...)의 순으로 한다.
10. 자료 인용 부분이나 개념어, 역사적 용어, 지명, 인명 등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적인 용어는 가급적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11. 인명에서 존칭은 생략한다.
12. 외국 인명이나, 지명 그리고 기관 단체 등의 명칭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통용하는 역어나 약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며, 맨 처음 나온 글자에 한하여 한글 표기기에 이어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13. 띄어쓰기 등은 '한글맞춤법'을 기준으로 한다.

14. 인용문과 각주 그리고 참고문헌 등의 제반 형식은 본 연구원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15. 표와 그림 그리고 사진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그림 2>, <사진 3>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표나 그림 그리고 사진의 제목과 설명 그리고 출처 등은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16. 심사시 저자의 의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자의 이름은 별도의 표지에만 적으며,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졸고'나 '졸저' 같은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언급도 피한다.
17. 외국어 초록(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주제어 포함)은 한글 초록에 준하되 편집원고 1쪽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작성도구) 투고 논문은 '한글 2005 이상'으로 작성하되,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제11조 (별쇄본) 저자에게는 『白山學報』 2부와 별쇄본 5부를 증정한다.

제12조 (지적소유권) 학보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 등의 지적소유권은 학회가 갖는다.

제13조 (인용문현작성요령)

1. 인용 문현은 각주로 처리하며 다음 내용에 따라 서술한다.
 - ① 논문의 표기는 필자, 연도, 「논문제목」『제재지명』권·호수, 학술단체명, 면수.의 순서로 한다.
예) 홍길동, 1999. 6, 「대륙관계사」『白山學報』 12, 백산문화, 77~99쪽.
단, 저명한 학술지 또는 각주에서 학술단체명이 한 번 서술된 학술의 경우는 해당 학술단체명을 생략한다.
 - ② 단행본이나 보고서의 표기는 저자, 연도, 『서명』, 출판사 또는 기관명, 면수.의 순서로 한다.
예) 홍길동, 1999, 『한국의 북방영토』, 백산문화, 66쪽.
홍길동·임꺽정, 1999, 『간도는 우리 땅』, 백산문화, 88쪽.
 - ③ 단행본 내의 논문 표기는 필자, 연도, 「논문 제목」『제재서명』, 출판사, 면수.의 순서로 한다. 단 편저로 간행된 단행본의 경우는 『제재서명』 뒤에 괄호로 편자자명을 기입한다.
예) 홍길동, 1999, 「대륙관계사」『백산학보』, 백산문화, 101~102쪽.
홍길동, 1999, 「북한의 구석기유적 연구」『백산학보』(지구인 편), 백산문화, 103쪽.

- ④ 본문 중에 서술되는 사료는 원문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는 국문 번역문으로 서술 할 수 있다.
- ⑤ 각주로 인용된 사료는 『사서명』 권수, 편명 권수, 연월일 등으로 한다.
예)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혁거세거서간 4년 4월 辛丑.
- ⑥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도 위의 예를 따르되, 「 」나 『 』 표시 없이 논문명은 인쇄체로, 저서(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2. 도면 · 사진 · 지도 · 도표 등이 있을 경우는 다음의 방법을 따른다.

- ① 그림 · 사진 · 지도 · 도표 등은 <그림 1>, <사진 1> 등으로 표기하되, 출전을 밝힐 경우는 각주 인용 방법에 준하여 서술한다.

백산학회 논문 심사 예규

1. 본 학회의 학회지 『白山學報』에 게재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논문에 한정하나, 연구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중요한 논문은 필자의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게재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본 학회 연구위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연구위원의 추천을 받아 본 학회에 접수된 논문은 일차로 본 학회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회장은 투고 마감일 이후 14일 이내에 연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연구위원회는 심의를 통과한 개개 논문에 대하여 본 학회 연구위원·편집위원 또는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공자로 논문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논제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를 시행한다.
5. 개별 논문에 대한 논문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심사 소견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취합하여 7일 이내에 게재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6. 논문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 학회지에 게재 적합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회장은 자체 없이 편집위원회를 소집, 게재 논문의 편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게재 대상 논문을 선정한다.
7. 편집위원회의 학회지 게재 대상 논문 선정은 논문의 중요성과 예상되는 학계에의 공헌 등을 고려해야 한다.
8. 이상의 심의·심사·선정 과정에서 우열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투고자가 본 학회의 활동과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9. 논문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게재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게재가 되지못한 논문은 차기 학회지 발간 시 심사 면제와 함께 게재 우선권을 준다.
10.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백산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학회의 윤리규정은 회원 및 원고 투고자가 학회의 회칙에 규정된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나아가 연구에 대한 부정 행위가 발생할 때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 (부정 행위의 범위 및 회원의 의무) 연구와 관련된 표절 행위는 연구결과의 발표 및 그 진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칭하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연구 과정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연구 과정에 있어서 각종 사료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타인의 창의적인 논리·용어·데이터·연구 체계·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원저자의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일방적으로 도용하는 행위.
4.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또는 타인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왜곡 게재한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연구 결과의 간행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손질만 한 뒤 이중으로 학회의 회지에 투고하는 행위.
6. 연구 수행의 결과로 도출된 연구업적의 성과물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독단적인 행위.
7. 기타 본 학회의 학회목적이나 규정 등에 크게 위배되어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 행위.

제3조 (심의 및 판정 주체) 본 학회의 정기 학술지인 『白山學報』 또는 본학회에서 간행한 각종 저작물에 연구 결과 등이 이미 게재되었거나, 또는 심사 중에 연구 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

를 판정하고 징계 내용을 확정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칙 제 4장 11조 4항에 규정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맡으며, 위원회의 위원임명은 학회장이 지명한다.
2. 학회의 간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간사직을 겸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은 본 학회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의 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나 접수 및 조사·판정·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심의 기간) 심의는 제보 또는 제소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 시작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

제8조 (조사 협조 의무)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9조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1.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정 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 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의 진술이나,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결과 보고서 작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제소 내용.
 - ② 조사 대상 연구 부정 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심사 절차 및 연구 부정 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④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의 인적 사항.
 - ⑤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

제12조 (판정 및 징계)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2. 연구 부정 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부정 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① 『白山學報』 게재 취소 및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白山學報』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② 단행본으로 간행된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의 재발행 시 해당 내용물 삭제.
 - ③ 향후 5년 간 『白山學報』 및 본 학회 간행물에의 투고 금지.

- ④ 연구 부정 행위 판정 이후 즉시 백산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향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白山學報』에 판정 내용 공시.
- ⑤ 연구 부정 행위자의 소속 기관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 (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2. 결과 보고서는 최종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연구윤리위원의 발의로, 평의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16조 (예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윤리 강령 및 본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